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0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박지혜·최민희·위성곤
허영·안도걸·권향엽
박정현·최혁진·이주희
이병진·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로, 정부의 정책 역량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 구조, 일자리, 지역경제 등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음.

이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시민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심의와 협의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47조의2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후시민의회) ①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시민의회(이하 “기후시민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시민의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의 관점에서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시민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제목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을 “(정의로운전환 대책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정의로운전환위원회)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47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이하 “정의로운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의로운전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5인
2.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
4. 취약계층 및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

③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5인으로 한다.

④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의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협력업체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⑥ 취약계층 및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집단 및 영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자영업자·농어민·중소상공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의로운전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2(기후시민의회) ①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시민의회(이하 “기후시민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기후시민의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의 관점에서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u> <u>③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시민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u>	<u>제47조(정의로운전환 대책의 마련)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u>

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정의로운전환위원회)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47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이하 “정의로운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의로운전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5인
2.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
4. 취약계층 및 시민단체를 대

표하는 위원 5인

③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5인으로 한다.

④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의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협력업체의 사용자를 대표하

는 사람

⑥ 취약계층 및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집단 및 영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자영업자·농어민·중소상공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